##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60

발의연월일: 2025. 4. 30.

발 의 자:이정문・한민수・이학영

문진석 · 조승래 · 복기왕

박 정・김남근・김원이

모경종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을 규정하되, 예외적으로 같은 업종의 사업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및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그 수가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. 이에 대해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조합 가입,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권리·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, 법률에 조합원 수 제한에 대한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협동조합 가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시

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3조 제2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조합원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13조(조합원의 자격) ① (생 | 제13조(조합원의 자격) ① (현행 |
| 략)                 | 과 같음)               |
| ② 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  | ②                   |
|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원으로 할 수 있다. <단서 신  |                     |
| <u>설&gt;</u>       | 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하는 경우 그 수는 대통령령이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조합원수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  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다.</u>           |
| ③ (생 략)            |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|